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는 향후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을 차단하여, 동 물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령 제1007호, 2023. 7. 21., 제정]. 그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제7202.30-0000호)
2. 적용 기간: 동 규칙을 공포한 날[2023. 7. 21]부터 5년
3. 부과대상물품의 공급국: 베트남, 인도
4.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별표)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베트남	1.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0%
	2. 그 밖의 공급자	
인도	3.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04%
	4. 마이탄(Maithan Alloys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몰텍스(Mortex Grou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 그 밖의 공급자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27호)
- [붙임2]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상세)
- [붙임3] 조문별 개정이유서
- [붙임4]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70-4353-1587
E djkim@esein.co.kr



정성우 팀장
T 070-4353-5151
E swjung1@esein.co.kr